

독일 판결

**기본적으로 사회적 유명인사의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휴가 중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허가 없이 공개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조문 : 기본법 제5조;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0조;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  
연방대법원 2007년 7월 3일자 판결 - VI ZR 164/06 (함부르크 고등법원)

판결요지

사회적 저명인사의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 여러 단계의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예술저작권법 제22조와 제23조가 의도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여자친구와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세계적 축구골키퍼인 올리버 칸의 사진 공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사진공개에 대한 부작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소를 인용하였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허용한 상고심에서 피고는 지속적으로 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축구 선수이다. 피고는 "Frau im Spiegel"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있다. 이 잡지의 2005년 7월 21일자 2005/30호에는 원고가 St. Tropez의 산책로에서 그의 여자친구 V.K.와 함께 산책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사진 아래에는 원고가 여자친구와 열애에 빠져 같이 있는 장면을 들켰다는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다. 또한 원고가 그로부터 일주일 전 자신의 가족(당시의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Sardinien에서 미리 계획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이유

I.

[3]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이른바 사회적으로 절대적 유명인사(absolute Person der Zeitgeschichte)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개된 사진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시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의 무단공개로 원고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이 보장하고 있는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 영역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구속된다는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인이 다수

인 한가운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공개적 장소에서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만 사진공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휴가생활을 담고 있는 사진정보에 대해 피고가 발행한 잡지를 구독하는 독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단순한 소일거리에 해당하는 정도의 미미한 이익만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의 효과적인 사생활 보호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보도용으로 사진이 촬영되는 저명인사들의 경우 종종 그러한 성가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보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2004년 6월 24일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살펴보면 사진공개로 인하여 예술저작권법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 II.

[4] 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결과적으로 상고심까지 유지되었다.

[5] 1. 원고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다수인 가운데 한명으로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사진이 찍혔는지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와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한 하급심 판결재판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언급한 한적한 장소인지의 여부를 여러 재판에서 고려해왔다. 하지만 원고는 좀 더 진전된 기준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문제가 된 사진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6] 2. a)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인물 사진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의 사진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진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또한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이 의미하는 일상적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허가 없이 그의 사진공개를 수인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경우 사진공개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러한 사진의 공개는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혔는지 아닌지 그 장소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허용되지 아니한다(재판부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대해서는 AFP 2007 S. 121 ff. und S. 208 ff.).

[7] b) 사진이 시사적 사건이라는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상생활(Zeitgeschehen) 개념이 중요하다. 이 개념은 좁은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공의 정보욕구와 관련하여 이 개념은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가진 사건만이 아닌, 일반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적 이익이 존재하는 모든 일반적 의문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 또는 관심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답소도 의사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한 기여는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의사형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진묘사행위가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게 될 때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보도가 항상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일상적 보도에서 공공의 정당한 정보이익에 대한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는 개별사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8] c) 출판의 자유와 의사형성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출판이 법적 한도 내에서 충분한 재량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출판은 대중매체로서 가지는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무엇이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공익적 사안인

지 의사형성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2004년 6월 24일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는 출판의 자유의 의미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와 연관되어 강조된 바 있다. 출판이 민주국가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인들이 가지는 모든 의문사항에 대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 출판의 임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일상생활(Zeitgeschichte)의 개념과 일치한다. 재판소가 이러한 권리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한 이러한 제한은 명백하게 출판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공공의 알 권리 사이의 비교형량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 보호로 인한 비교형량 등과 관련된다. 보도내용으로부터 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 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을 대중매체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지라도 출판물은 보도내용에 대해 사생활 보호와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다.

[9] d) 따라서 공공의 알 권리와 보도된 사람의 사생활 보호이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익형량을 위해 한 정보가치의 의미는 재판부가 이전의 판결에서 강조하여 왔다(BGHZ 151 S. 26 [30]; VersR 2004 S. 522[523]; NJW 2007 S. 1977 [1979]). 공공을 위한 정보 가치가 높을수록 알려야 할 정보 가치는 커지게 되어 개인적 보호이익은 공공의 정보요구의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당사자의 인격권은 일반을 위한 정보 가치가 적을수록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이와는 반대로 순수한 대화에 대해 독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비해 작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연방헌법재판소가 2006년 8월 21일자 결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 즉 이러한 사례에서는 높은 지명도를 가진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견해로는 이러한 질문은 기본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2004년 6월 24일자 판결을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적 유명인사

에 대해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도됨으로 인하여 객관적 사실에 대한 토론에 기여하는지 아닌지는 무시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도의 정보가치에 따라서 관련자의 지명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 가치에 대한 평가, 특히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상적 시사내용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출판의 본연적 임무인 의사형성임무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익형량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기본법 제5조를 고려하면서 사생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의 구속효에 반대되지 아니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서두에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독립된 공간에서의 원하지 않는 사진촬영으로부터 사생활의 보호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하지만 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라는 이익을 형량하게 될 때 공공을 위한 정보가치가 더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15일에 대체로 이러한 기본원칙에 상응하는 결정을 하였다(BVerfG, AfP 2006 S. 354 ff. = NJW 2006 S. 2835).

[10] 따라서 사진게재의 정보가치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을 하게 될 경우, 본 사건과 같이 사진설명과 함께 게재된 사진에서 사진설명은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NJW 2004 S. 2647[2650], Rdn. 64; AfP 2007 S. 208 ff.).

[11] 2. 본 사건은 이러한 기본원칙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형량하면서 해결되어야 한다.

[12] 문제가 된 사진은 St. Tropez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유명인사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일상 사람들”(Leute aktuell)이라는 보도의 일부분이다. 이 출판물이 이 사진을 기본적으로 보도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더라도 출판은 공공의 의사형성을

위해 새롭고 진실한 정보의 보도여부,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중요성 없는 사적 대화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결국 사진 촬영된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사진게재는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다. 사진 촬영된 사람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그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이로 인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예술저작권법 제22조).

[13] 원고와 여자친구가 St. Tropez에 체류하고 있다는 보도는 일반의 공공이익이라는 어떠한 기준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EGMR, NJW 2004 S. 2647 [2649

f.] Rdn. 60 ff.). 그리고 이 사진보도는 일상 시사적 내용과도 관련성이 없다. 이는 문제가 된 사진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사진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유명인사의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휴가 중의 원고와 여자친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진보도는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원고와 같이 사진촬영을 당한 사람은 허가 없는 사진공개를 통한 인격권 침해를 수인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AfP 38. Jahrgang Heft 5 - 2007 SS. 475~477.

번역 : 권형돈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일본 판결 1**

**민주당 소속 의원인 원고가 우정(郵政)민영화 법안의  
중의원 통과 직후에 동 법안 찬성파 의원과 동 법안 통과  
「축하회」에 참가했다는 내용 등을 적시한 주간지의 기사에 대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중요한 전제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평가적인 기재를 하고 있는 점에서 공정한  
언론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자료 500만 엔의 지불과  
전국지에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한 사례**

원 고 : 筒井信隆

피 고 : 주식회사 小學館, 동 대표취체역 相賀昌宏 외 3명  
도쿄지법 2005(7) 제15213호, 사죄광고 등 청구사건  
2007. 1. 17 민사 제34부 판결, 일부 인용·항소  
2006년 11월 8일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小學館, 동 春野一郎 및 동 秋山二郎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5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9월 2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주식회사 小學館, 동 春野一郎 및 동 秋山二郎은 별지 2의 제2기재의 사죄광고를 동 2의 제1기

재의 요령으로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小學館, 동 春野一郎 및 동 秋山二郎에 대한 다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夏川二郎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 주식회사 小學館, 동 春野一郎 및 동 秋山二郎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실 및 이유

### 제1 청구

1. 피고 등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0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5년 9월 2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등은 요미우리 신문 조간 전국판에 별지 1의 제2기재의 사죄광고를 동 1의 제1기재의 요령으로 1회 게재하라.

### 제2 사안의 개요

#### 1. 사안의 요지

피고 春野一郎, 동 夏川二郎 및 동 秋山二郎 등은 동 주식회사 小學館 발행의 주간지 「주간ポスト」(포스트)의 편집관계자로, 동지 2005년 7월 22일호에 『고이즈미 수상 「해산」 결의(決意)!, 「이로써 자민(自民)도 민주도 깨지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기사 속에 원고에 관한 허위의 기재가 있으며, 이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피고 등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했다.

2.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 등을 ( )안에 표시하며, 직전에 표시한 증거의 쪽 번호를 [ ]안에 표시한다.)

(1) 당사자

① 원고

원고는 민주당 소속의 중의원 의원이며, 주간지 발매 당시 의원(議院) 운영위원회의 수석이사였다. 동년 9월 20일부터 민주당 상임간사, 동월 22일부터는 결산행정감시 상임위원장으로 있었다(다툼이 없는 사실).

② 피고

Ⓐ 피고 주식회사 小學館(이하 「피고 小學館」으로 한다)은 잡지 및 서적 등의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다툼이 없는 사실).

Ⓑ 피고 春野一郎(이하 「피고 春野」로 한다)는 피고 小學館이 발행하는 주간지 「주간포스트」의 편집장, 피고 夏川二郎(이하 「피고 夏川」으로 한다)은 동 주간지의 취재기자, 피고 秋山二郎(이하 「피고 秋山」으로 한다)은 동 주간지의 데스크이다(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의 전 취지).

(2) 기사의 게재

피고 小學館은 「주간포스트」 2005년 7월 22일호(이하 「본건 주간지」로 한다)에서의 『고이즈미 수상 「해산」 결의(決意)!, 「이로써 자민도 민주도 깨지다』라는 제하의 기사(이하 「본건 기사」로 한다)에서 『채결(採決)전부터 「축하회」 의논』이라는 소제목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장(이하 「본건 문장」으로 한다)을 게재하여 동월 9일에 발매했다(다툼이 없는 사실).

“채결 다음날 자민당 반대파가 집결하는 한편에서는 흥미로운 회합이 열리고 있었다. 장소는 도쿄시내 平河町の 越後요정. 그곳에는 川崎二郎 중의원 운영위원장, 민주당의 筒井信隆씨 등 어제까지 국회에서 날을 세우고 싸우던 자민당과 민주당의 운영위원회

이사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법안 중의원 통과에 「축하회」였다.

「이날의 회합은 약 1주일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5일 체결』로 여·야당이 합의한 시점에서, 민주당 쪽이 위로회를 제의해왔다, 「자민당 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뇌부가 綿貫씨, 龜井씨 등과 접촉, 공투(共闘)를 맺어가면서, 국회 대책의 현장에서는 역으로 자민당의 민영화 추진과와의 담합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이 『민주당도 깨진다』고 정계개편에 자신을 표명한 것은, 해산으로 자민당 반대파를 제명하는 한편으로, 민주당에 손을 뻗쳐 친(親)고이즈미 세력을 빼돌릴 공작을 벌여왔기 때문이 아닐까」”

### 제3 당 법원의 판단

#### 1. 사실의 인정

전기 제2의 2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더해,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 등을 ( )안에 표시하며, 직전에 표시한 증거의 쪽 번호 등을 □안에 표시한다. 이하 같다).

#### (1) 본건 회합 개최의 경위 등

##### ① 원고의 입장

원고는 민주당 소속의 중의원 의원이며, 본건 주간지 발매 당시 중의원 운영위원회 수석이사로서 동당의 방침대로 우정민영화에는 반대입장이었다.

② 우정민영화 법안을 둘러싼 중의원의 심의상황 등 동 법안은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동년 6월경에는 여당인 자민당 내에도 반대하는 의원이 상당수 있어 성립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서, 심의상황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동년 7월 6일 서밋(summit·주요국 정상회담)에 참가할 예정이었어서, 자민당과 총

리관저 측은 총리가 귀국할 때까지 중의원 본회의가 열릴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출발 전에 가결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의 저지를 위해 체결일정을 가급적 지연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향을 갖고 있었다. 또 원고는 동 법안이 중의원에서 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른바 다수파 공작 결과, 부결될 공산이 있으면 체결일정을 앞당기고, 가결될 공산이 크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체결일을 늦춘다는 방침이었는데, 늦추기 위한 대책의 성공여부는 동월말의 시점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5년 6월 30일 동 법안의 중의원 우정민영화 특별위원회에서의 체결예정일이 7월 4일로 결정되었다.

#### ③ 본건 회합의 개최 경위

山口의원은 2005년 6월경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議院) 운영위원회 동당 수석이사로서, 동 법안에 반대하는 자기의 입장과 수석이사의 직무를 양립시키기 어렵다고 판단, 동 이사직의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 원고는 여당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과 같은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山口의원을 위로하는 한편 동 법안에 대한 반대분위기를 만들어 낼 의도 하에 동 의원의 위로회 개최에 착안, 동년 7월 1일 민주당의 池田국회대책부위원장, 牧野의원과 공동으로 그 취지를 山口의원을 대신하여 자민당의 수석이사에게 취임한 鈴木恒夫의원(이하 「鈴木의원」으로 한다)에게 제안, 개최일을 동월 7일, 장소는 의원들이 잘 이용하는 越後요정으로 결정했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개최일이 동월 6일로 변경되었다.

동월 5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동 법안이 가결되도록 되어있었으나 원고는 참의원에서의 심의 및 체결이 그 이후로 잡혀 있다는 점에서 본건 회합을 개최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건 회합은 동월 6일 예정대로 개최되어, 동 법안

에 반대한 鈴木의원과 원고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 그리고 이에 찬성한 자민당 및 공명당의 의원 3명이 출석했다. 회비는 山口의원을 제외하고 각자 부담으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 몫으로 5만 엔을 원고가 부담했으며, 나머지 7만여 엔을 자민당의 川崎二郎의원 운영위원장이 부담했다.

## (2) 「주간포스트」에 관하여

① 「주간포스트」는 1969년에 창간된 전국 주간지로 2004년의 발행부수는 약 80만 부, 2005년의 발매부수는 44만 8291부.

② 「주간포스트」 편집부는 편집장과 3 ~ 4명의 부편집장, 취재 및 기사작성의 지휘 관리를 하는 데스크 그리고 수 명의 편집부원(편집자)이 배속되어있다. 데스크는 편집자로부터 취재결과를 보고받고, 편집장, 부편집장과 협의를 거쳐 편집자를 지휘하면서 취재 및 기사작성을 관리한다. 기사는 편집자나 편집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라이터(앵커라고 불린다)가 집필한다. 기사내용과 게재는 최종적으로 편집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③ 보도기사는 플랜회의에서 기획을 검토한 후 데스크가 기획을 선별, 데스크회의(편집장, 부편집장, 데스크가 참가)에 제출하여 테마가 결정되면 편집자에게 취재를 지시한다. 편집자는 스스로 또는 외부의 취재기자에 의뢰하거나 지시하여 취재를 하며, 데스크 및 편집장의 확인을 거쳐 입고(入稿)한다.

## (3) 본건 기사의 기획 등

① 피고 秋山은 2005년 7월 1일 언론인 冬木으로부터 동월 6일 여·야당의 의원 운영위원회가 연회(앞의 「본건 회합」을 지칭)를 예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월 4일의 기획회의에 이 정보를 내용으로 한 기사의 기획을 제출, 편집장으로부터 정국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② 피고 秋山은, 冬木으로부터 동월 5일 山口의원 의 위로회라는 명목으로 예정대로 6일에 열리며, 회

합을 주도한 사람이 원고이고, 장소는 아카사카(赤坂)의 越後요정이라는 정보를 얻고는, 편집자에게 본건 회합의 취재와 사진촬영을 지시했다. 또한 피고 秋山은 동월 7일 부하인 北野편집자를 통해, 피고 夏川에게 원고 본인 및 鈴木의원에 대한 취재를 지시했다.

## (4) 본건 기사에 관한 취재경위

### ① 본건 회합의 취재

「주간포스트」의 사진기자는 2005년 7월 6일 오후 9시경까지 본건 회합의 개최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했으며, 참가하는 의원들의 사진 및 연회장소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이 장소에 국무대신이 참가했음이 확인되어 편집부에 보고되었다.

### ② 원고 본인 및 鈴木의원에 대한 취재

피고 夏川은 2005년 7월 7일 의원회관 내 원고의 사무실과 鈴木의원 사무실에 각각 전화를 걸어 취재를 하려 했으나, 부재중이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피고 夏川은 전화에 응대한 鈴木의원 의 비서에게 질문, 본건 회합이 의원 운영위원회 수석기사를 사임한 山口의원에 대한 위로회였다는 것, 정국에 관한 대화는 없었다는 것, 개최일은 山口의원 이 사임한 직후에 결정됐다는 것, 참석자는 여당 4명, 민주당 의원 4명이였다는 것, 개최장소에 나타난 국무대신은 본건 회합과 관계가 없다는 것 등을 들은 후, 그 내용을 北野 편집장에게 보고하고 데이터원고를 작성, 전자메일로 송신했다.

## (5) 본건 기사의 편집, 발행, 발매

① 피고 春野 및 秋山 등은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원고로부터의 연락이 있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없었다. 그런데 위로회에 대한 원고의 명목이 무엇이든, 동 법안의 체결을 예측하고 연회를 주선하여 자민당 관계자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밀회로, 민주당 집행부에 대한 배신행위임에는 틀림

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기사를 집필, 교정까지 끝냈다.

② 본건 기사가 게재된 「주간포스트」 7월 22일호는 동월 9일 피고 小學館으로부터 가두판매되었다.

#### (6) 본건 기사 발매 후의 사정

① 7월 14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피고 秋山이 본건 기사내용의 의도 등을 원고에게 설명했으나 이해를 얻지 못했다.

② 동월 17일 오후 원고의 사무실에 「정치인의 일구이언을 우려하는 시민으로부터」라는 명의로 「속임수의 가면이 드러난 筒井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글이 팩스로 전송됐다. 이 글은 「주간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원고가 동 법안이 중의원에서 채택된 다음 날, 자민당의 민영화 추진과와 축하회를 열어 축배를 들어, 민영화 추진의 담합을 거듭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구이언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표리부동한 의원을 우리들의 대표로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즉각 사퇴해야한다!」 내용이었다.

③ 9월 11일에는 제44회 중의원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원고는 4선을 이루었다. 또한 山口의원은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채 입후보, 당선된 후 동당을 탈당했다.

## 2. 본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

### (1) 본건 기사의 해석

① 전기 제2의 2(2)와 같이 「채결 전부터 ‘축하회’를 의논」이라는 소재목 하에 「그 곳에는 川己二郎중의원 운영위원장, 민주당의 筒井信隆씨 등 전일까지 국회에서 서로 대립했던 자민당과 민주당의 운영위 이사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놀랍게도 법안 중의원 통과와 축하회였다」는 부분과 「축하회」가 법안 통과와 종료를 기념하는 연회를 통상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 법안의 가결을 기념하는 연회

라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은 동 법안에 반대 입장인 민주당에 소속한 원고가 동 법안이 가결된 것을 기념하는 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용(受容)이라고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수뇌부가 綿貫씨나 龜井씨와 접촉, 공동투쟁을 맺으면서, 국회대책의 현장에서는 역으로 자민당의 민영화 추진과와의 담합을 거듭해왔다」는 부분도, 상기의 「축하회」라는 부분에 이어, 국회대책의 현장에 있는 원고가 소속 정당의 방침에 반해 자민당의 추진과와 부정한 담합을 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는 기재(記載)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이에 대해 피고들은 「축하회」나 「담합」이라는 표현은 본건 회합에 대한 평가, 논평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회합의 취지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되는 바, 회합의 취지는 회합의 주최자나 참석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사실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될 수 없다.

### (2)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영향

본건 기사는, 원고가 동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찬성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에 대해 자신의 정치이념을 개진하고, 이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어, 정치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 기사의 적시사실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 3. 진실성, 상당성의 유무에 대하여

### (1) 진실성에 관한 판단

상기 여러 정황으로 보아, 본건 회합이 동 법안의 가결을 기념하는 취지의 회합이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는 인정될 수 없으며, 원고가 그러한 의도를 갖

고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없다. 그리고 본건 기사는 본건 회합의 취지에 관해, 단순히 위로회라고 기재했을 뿐, 자민당의원이면서 동 법안에 반대한 鈴木의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동 의원을 포함하여 동 법안에 반대한 출석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일체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회합의 평가를 좌우할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독자의 평가를 오도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상당성에 관한 판단

원고 본인의 사무실에 대한 한 번의 전화로 동인에 대한 취재를 시도한 것이 인정되기는 하나, 결국은 취재를 하지 않았고, 다른 출석자에게도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한편 본건 회합에 출석한 鈴木의원의 비서에 대한 취재에 의해 본건 회합의 목적이 수석이사를 사직하고 동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자민당의 山口의원의 위로회였으며, 정국에 관한 살벌한 대화는 일체 없었다는 정보를 얻어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있어서는, 본건 회합이 상기 (2)와 같은 목적의 것이었으며, 상기 특별한 사정의 존재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취재에 의해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건 기사의 내용에 관해서는, 피고들에게 있어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자료 혹은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들의 주장은 전기 제2의 3(2)에서의 주장으로 보아, 상기의 鈴木의원의 비서로부터의 취재내용을 가미(加味)했다고 하더라도 본건 회합의 취지는 동 법안의 중의원 통과와 축하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평가가 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일반 독자가 결정할 것이므로, 그러한 평가를 포함한 본건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상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한, 일반인이 그러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

으며, 만일 피고들의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상기 鈴木의원 비서로부터의 취재내용까지도 밝힌 다음 일반 독자의 평가에 맡겨야 할 것이며, 본건 기사는 본건 회합의 평가를 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제사실의 기재가 없어, 피고들이 내린 평가에 따른 사실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정한 언론활동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 4. 책임 원인에 대한 요약

(1) 이상에 의하면, 본건 기사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이에 대해 기사내용이 공익성이 있고, 또한 공익목적을 가지고 게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본건 기사를 본건 주간에 게재하여 발행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피고 秋山은 본건 기사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본건 문장을 포함한 본건 기사의 문장에 붉은 글씨로 교정을 가했으며, 피고 春野도 편집장으로서 같은 관여를 했음이 인정되어, 피고 小學館은 본건 기사를 포함한 본건 주간지를 발행, 발매했으므로 이들 피고는 각자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구성은 상기와 같이 본건 기사를 집필, 편집, 발행했다는 데 있는 바, 피고 夏川은 北野편집자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는데 불과하며, 집필, 편집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夏川은 고작 본건 불법행위를 방조한 가능성이 있다는데 불과하며, 본건 기사의 내용이 본건 문장과 같이 될 것이란 것을 예견했거나 예견이 가능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夏川에 대해서는 본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더구나 피고 등은, 원고가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대책부위원장, 중의원 운영위원회 수석이사라는 공적지위에 있고, 그 활동이 널리 국민들의 비판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본건 기사내용이 설령 행동의 목적, 평가나 의미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인식과 다르다고 해도 수인(受忍) 한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구성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건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고, 공익을 도모할 목적 아래 본건 기사가 게재된 것이라고 인정되나, 이 주장은 결국 피고들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채용될 수 없다.

## 5. 손해의 내용에 대하여

### (1) 손해의 내용에 대하여

본건 기사로 발생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에 의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해 검토한다. 원고는 민주당 국회의원, 의원 운영위원회 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표명해왔고, 그런 사실을 지지자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었는데, 본건 기사에 의해 찬성파로 전향한 것 같은 행동을 취했으며, 동 법안에 반대의 의향을 갖고 있는 민주당 수뇌부에 반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인상을 일반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에게 있어, 정치신조의 여하는 유권자로부터의 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정치생명에도 관련되는 바, 본건 기사가 주제로 한 동 법안은 본건 기사 발행 당시 중요한 정치과제였고, 동 법안이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가결이나 부결 여하에 따라서는 중의원의 해산,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왔으므로, 이러한 중요한 정치과제에 대한

언행불일치를 의심받게끔 하는 본건 기사에 의해 정치신조의 일관성에 의문이 생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은 용이하게 추인(推認)된다.

실제로 원고에 대해서는 정치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팩스 문서가 송신되어 오기도 하고, 다른 의원이 원고의 입장에 대해 석명(釋明)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었다. 따라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현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업무방해내용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건 문장의 게재에 의해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2)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상기 (1)에서 실시한 사정에 더해, 「주간포스트」가 전국을 대상으로 발매되는 주간지라는 사실 및 그 발행부수에서 보면 본건 기사에 의한 영향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건 기사 발행 후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선거에서 원고가 당선되었고, 또한 사죄광고의 게재를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정도로 위사(慰謝)된다고 보아짐으로 본건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500만 엔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3) 사죄광고의 게재에 대하여

상기 (2)에 더해 원고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에 의한 언설(言說)의 중대성, 본건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축하회」라는 표현에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뿐 반성과 사죄의 태도가 불충분하고, 본건 기사가 전국에 유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대로 오미우리신문 전국판에 사죄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것도 상당하다.

또한 앞에서와 같이, 피고 夏川의 불법행위책임이  
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방해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광고자체 및 문자 크기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사죄광  
고의 게재요령 및 그 내용은 별지2·제2의 한도 내

에서 하는 것이 상당하다.

출 처 : 『판례타임즈』 1247호 (2007. 10. 15.) pp. 276~284.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 일본 판결 2

### 주간지에 원고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동시에 신문광고 및 전동차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안에 당해 주간지의 광고를 게재한 출판사 등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결,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의 게재가 인정된 사례

원 고 : 주식회사 넥서스(ネクサス), 대표이사 池谷誠一  
피 고 : 주식회사 新潮社, 대표이사 佐藤隆信 외 3명  
도쿄지법 2002(7) 제25138호,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2005. 4. 19. 민사 제45부 판결, 일부인용·항소  
2005년 1월 14일 변론종결

#### 주 문

1.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55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2년 9월 1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주식회사 新潮社는 동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지 「週刊新潮」에 별지1 기재(1)의 사죄광고를, 동 기재(2)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실 및 이유

##### 제1 청구

1.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해 연대하여 5,5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02년 9월 12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新潮社는 동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지 「週刊新潮」에 별지2 기재(1)의 사죄광고를, 동 기재(2)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3. 피고 신조사는 별지3 기재(1)의 사죄광고를, 동 기재(2)의 조건으로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및 일

본경제신문의 각 전국판 조간 사회면에 각 1회 게재 하라.

## 제2 사안의 개요

본건은 피고 주식회사 신조사(이하 「피고회사」로 한다)가 발행하는 주간지에 게재한 기사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하는 한편, 상기 기사의 편집발행인인 피고 Y1, 상기 기사를 집필한 피고 Y2 및 상기 기사의 근본이 되는 취재를 한 피고 Y3에 대해 피고회사와의 공동 불법행위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 제3 당 법원의 판단

### 1. 쟁점1에 관하여

#### (1) 본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① 본건 기사는 3쪽의 기사이며, 첫 페이지에는 약 4분의 1쪽 공간을 사용하여 오른쪽 상단에 독자의 눈길을 끄는 형태로 「러시아에서 미술품 『절도』 뒤틀린 요구 의혹, 『무엇이든 감정단(鑑定團)』 재하청프로의 스캔들투성이」라는 본건 제목이 붙여지고, 다시 같은 페이지의 왼쪽 구석 약 4분의 1쪽 공간에 「텔레비전 업계에서 트러블의 온상이 돼있는 것이 프로젝트 제작 프로덕션에 대한 “재하청”의 문제이다. 텔레비도 교의 『개운(開運)! 무엇이든 감정단』은 평균시청률 15% 전후를 자랑하는 인기프로이나, 실제의 제작은 하청프로. 이곳에서도 표면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 역시 스캔들투성이다. 프로출연을 둘러싼 “뒤틀린 요구”로 시작되어, 마침내는 러시아에서 미술품 절도 의혹까지 고발되었다」는 리드부분을 배치하고, 기사 본문에서는 출장감정에 뒤따르는 뒤틀린 요구 의혹, 러시아에 있어서의 미술품 절도 의혹의 순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원고는 본건 기사의 게재에 대해, 본건 제목부분, 리드부분 및 기사본문, 나아가서는 본건 주간지 안의 본건 기사 차례부분의 모두가 별개 독립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 행위는 사실적시의 내용 및 표현매체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건 기사는 본건 주간지에 차례를 붙여 게재되어, 본건 제목부분, 리드부분 및 기사본문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건 기사가 뒤틀린 요구 의혹 및 미술품 절도 의혹의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논하기로 한다.

#### ② 뒤틀린 요구 의혹에 관하여

(가) 우선 본건 기사 제목 중 「무엇이든 『감정단(鑑定團)』 재하청프로」는 본건 프로를 제작하고 있는 프로덕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뒤틀린 요구 의혹」이라는 문언(文言)이 범죄인 「절도」의 다음에 기재된 점이라든가 「스캔들투성이」라는 문언과 더불어, 일반 독자에게 무엇이든 감정단의 작성과 관계가 있는 프로덕션이 표면에 내놓을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의 지불을 요구한 의혹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나) 또한 리드부분에 있어서는, 본건 프로의 프로젝트 제작 프로덕션에 대한 재하청이 트러블의 온상이 되어 스캔들투성이가 되었다는 평가를 덧붙여,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프로출연을 둘러싸고 원고가 「뒤틀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함으로써 독자의 전기와 같은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다) ② 그리고 기사본문에 있어서는, 모두에서 본건 프로젝트 제작 프로덕션이 원고임을 실명으로 밝히고, 「인기프로임을 방패로 하청회사의 횡포가 횡행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고 문제제기를 한 다음, 본건 출장감정에 응모한 본건 이벤트의 실행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① 무료로 프로출연이 된다고 생각

했는데 150만 엔이나 쥐야한다고 해서 놀랐다 ② 제작협력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이벤트와 함께 스케줄을 짰는데, 본건 출장감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③ 출장감정의 수록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상가의 상인들에게서 금전을 받았다 ④ 원고는 처음부터 제작협력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⑤ 제작협력금의 불입선은 텔레비 도쿄로 되어있으나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아 뒷돈이 아닌지 의심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이어 텔레비 도쿄는 하청회사인 원고에게 본건 프로의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비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감정의 개최비용 전부를 지역에 부담시킬 뿐 아니라 제작협력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피고의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본문은, 본건 제목 및 리드부분에서 말하는 뒷돈이란 제작협력금임을 알리면서 원고가 출연자 측의 약점을 이용,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제작협력금을 청구하면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금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⑥ 또한 기사본문은, 제작협력금의 청구취지가 본건 프로 내에서 시청자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하지 않는 원고 및 텔레비 도쿄의 행위는 사기적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로 인해 텔레비 도쿄의 상기설명은 불합리하다는 인상을 주고 더욱 더 제작협력금의 청구가 자의적이며, 석연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뒷돈 요구 의혹에 관한 부분을 매듭짓고 있다.

(라) 이상에 의하면 본건 기사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출장감정에 응모한 지역단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 약점을 잡아 원래 청구할 이유가 없고, 석연치 않은 표면에 내세울 수 없는 금전을 청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텔레비 프로의 제작회사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마) ㉔ 피고들은 「뒷돈」이라는 말은, 반드시 범죄에 직결되는 금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당 법원도 상기와 같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금전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회사인 원고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하는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⑥ 또한 피고들은, 본문기사의 내용이 하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내용으로 보아 비판의 대상은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될 수 없다.

### ③ 미술품 절도 의혹에 관하여

(가) 본건 제목 및 리드부분은, 본건 프로의 제작프로덕션이 뒷돈 요구 의혹으로 스캔들투성이라는 기사처럼 러시아 미술품의 절도 의혹도 있다는 인상을 일반 독자에게 주고 있음을 기사화하고 있다.

(나) ㉔ 미술품 절도 의혹에 관한 기사본문은 뒷돈 요구 의혹에 관한 기사에 이어 「더욱이 표면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프로제작을 둘러싼 트러블은 이것만이 아니다. 마침내 해외로oke와 관련한 미술품의 절도 의혹까지 밝혀졌다」는 문제제기를 한 후 본건 로케반의 코디네이터역인 M씨의 고발형식으로 그의 발언을 상세하게 인용했다.

⑥ 본건 기사는 이어 절도 의혹을 부정하는 다른 관계자들의 발언과 함께 절도 의혹을 부정하는 관계자들의 발언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코멘트도 게재했다.

(다) 이와 같이 본건 기사는, 원고가 본건 로케 때 감정사의 한 사람이 본건 미술관으로부터 그 소장품인 「根付」(ねつけ·江戸(에도)시대에 남자가 담배쌈지나 지갑의 끈 끝에 매달아 허리띠에 질러서 빠지지 않게 상아·산호 등으로 만든 세공품)를 절취했다는 M씨의 발언을 상세히 인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이를 부정하는 관계자의 발언의 신빙성에 관해 부정적인 논평을 가함으로써, 본건 제목 및 리드부분의 기재와 함께 일반 독자에게 원고의 로케에 참가한 감정사의 한 사람이 본건 미술관으로부터 「根付」를 절도한 의혹(객관적 혐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본건 프로의 제작프로덕션이 스캔들투성이, 텔레비 도쿄는 하청프로의 감정까지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는 등 프로제작에 그러한 감정사를 참여시키고 있는 원고를 비판하는 것이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 (2) 본건 광고에 관하여

본건 광고 중 「『무엇이든 감정단』 재하청프로」란, 본건 프로를 제작하고 있는 프로덕션, 즉 원고를 의미하며, 「스캔들투성이」의 내용으로 「러시아에서 미술품 『절도』」 및 「뒷돈요구」의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뒷돈 요구 의혹」이라는 문언은, 그 앞에 범죄인 「절도」가 기재되어있는 점 그리고 스캔들의 내용으로 예시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적어도 표면화 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의 지불을 요구한 의혹이 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건 광고에는 원고의 명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본건 프로 종료 시에 「제작 NEXUS」로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됨으로써, 일반 시청자가 본건 프로를 제작하고 있는 프로덕션이 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원고가 본건 프로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은 출장감정에 참여한 지역관계자까지도 포함하여 본건 프로에 출연한 다수의 사람들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관계자 등에게는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 광고는 원고와 그 관계자들이 러시아에서 미술품을 절도한 의혹이 있다는 것과 공식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의 지불을 요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시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광고는 그 자체가 원

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 2. 쟁점2에 관하여

### (1) 뒷돈 요구 의혹에 관하여

각 증거를 통한 프로제작협력금의 시스템에 의하면, 제작협력금은 지역단체의 주최에 의한 출장감정 때 제작비용 일부의 부담을 지역단체에 요구하는 것으로, 텔레비 도쿄와 원고 간에 텔레비 도쿄의 구좌에 불입하기로 하고, 그 곳에서 텔레비 도쿄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양해되어있다. 원고는 지역단체로부터 출장감정 응모에 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출장감정의 길」이라는 매뉴얼을 교부하고 그 취지와 금액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얻은 다음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래 청구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데 관해서는 「출장감정의 길」에도 기재되어 있고, 텔레비 도쿄가 청구서를 내서 텔레비 도쿄의 구좌에 불입되는 것이므로 석연치 않은 금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본건 출장감정은 지역주최형(型)이기 때문에 제작협력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원고는 본건 이벤트의 실시주체로부터 본건 출장감정 응모에 관한 문의가 있는 단계에서부터 「출장감정의 길」을 송부하고, 제작협력금이 소요된다는 설명과 함께 양해를 얻고 수락을 하는 것이다. 제작협력금이 소요된다는 것은 실행위원회 멤버에게도 전해져 양해되고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출장감정 뿐 아니라 스트리트·갤러리전(展) 및 다도회(茶道會) 등의 이벤트를 포함한 총액 350만 엔의 비용을, 출장감정의 입장정리권(券)과 다도회권을 세트에 배포, 찬조금을 모금하여 확보한다는 협의도 가졌다.

또한 출장감정에는 지역주최형 외에 원고가 기획·주최하는 원고주최형도 있는데, 이 경우 제작협력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본건 출장감정에 있어서도 원고는 제작협력금의 필요성과 금액에 대해 사전에 설명

하고 양해를 얻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조차 없이 스케줄이 결정된 단계에서 지역의 약점을 노려 제작협력금을 요구하거나 상대에 따라 청구의 유무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일은 없었음이 명백하다. 이상의 인정에 의해, 뒷돈 요구 의혹에 관한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러시아에서의 미술품 절도 의혹에 관하여

각 증거에 의하면, 러시아 공항에서의 C와 세관원 간의 트러블은, C가 러시아 입국 때 소지한 일본 돈의 신고를 태만히 한데서 생긴 일에 불과하며, C는 일본 돈을 달러로 바꾸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N4와 세관원과의 트러블도 N4가 출국 시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액과 신고액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N4는 세관원에게 수하물을 전부 보여주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 때 N4가 소지한 키홀더를 세관원이 갖고 싶어하여 이를 건네주었을 뿐이며, 「根付」의 절도 의혹과 관련시킬 사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본건 미술관 자체가 그 수장품이 절도되었음을 부인했고, 러시아 당국도 원고관계자의 신병구속이 없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객관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해 B는, C가 본건 미술관으로부터 훔친 「根付」를 N에게 휴대시켰고, 이것이 세관원에게 발각되어 몰수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언을 하고 있으나, B는 C가 「根付」를 훔치는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또한 모스크바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마친 B의 위치와 N4가 위치한 세관카운터와의 거리는 약 20m 떨어져 있어, B는 N4와 세관원 간의 주고 받는 현장의 일부나 전부를 목격한 것도 아니며, 관계자의 사후의 언동에서 절도 의혹을 추측한데 불과한 것으로, 그 추측에는 아무런 합리성이나 신용성도 부족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동인의 진술이나 증언은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본건 미술관의 학예원, 감정사, 원고

의 스태프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根付」의 조사가 진행되어 「根付」의 절도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며, 세관에서 「根付」의 절도가 발각되었으면서 그대로 출국이 허용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이미 인정한 객관적 사실에도 여러 가지로 반하고 있어 도저히 신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 의하면 본건 기사가 적시하는, 본건 로케에 참가한 감정사의 한사람이 러시아의 미술관에서 수장품을 절취한 의혹(객관적 혐의)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소괄(小括)

이상과 같이 본건 기사가 적시하는 사실은 모두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인지의 여부, 본건 기사를 게재하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피고들의 진실성의 향변은 인정될 수 없다.

3. 쟁점3에 관하여

(1) 피고들의 본건 기사에 관한 취재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שאַרף).

(2) 뒷돈 의혹에 관한 기사에 대하여

①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Y2는 F, 지역관계자, 텔레비 도쿄의 T2 및 G에 대한 취재결과를 근거로, 주로 F와 지역관계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제작협력금이 원래 청구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이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지역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구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집필했음이 인정된다.

② 제작협력금의 취지에 대해 F는 뒷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텔레비 도쿄의 이름으로 된 청구서를 내고 있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또한 F의 취재

때 제작협력금의 취지가 명기된 원고 작성의 「출장감정에의 길」, 텔레비 도쿄의 청구서 및 텔레비 도쿄의 구좌에 붙입한 영수증의 각 사본을 입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제작협력금에 관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바로 제작협력금이 석연치 않은 금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前橋지역 출장감정에서는 제작협력금이 지불되지 않았어도 괜찮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취재 때 前橋의 지역관계자도 前橋의 출장감정은 원고 기획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텔레비 도쿄의 T2에 대한 취재결과를 종합해서 생각하면, 출장감정에는 지역 주최와 원고 주최가 있어 후자의 경우 제작협력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前橋에서는 원고 주최임에도 불구하고 제작협력금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관계자 중에 있었는지의 여부가 제작협력금의 청구가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당연히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원고에 대해 그런 취지의 취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前橋의 출장감정은 당초 지역주최로 기획되었다가 제작협력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로 지역 측이 단념한 것이며, 그 후 수 개월이 지난 다음 원고의 프로편성 필요에 따라 원고 주최로 개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다. 前橋의 지역관계자의 말은, 이 두 개의 출장감정의 기획을 혼동했음이 판명된 것으로 생각된다.

④ 이상에 의하면 피고들로서는 F 및 지역관계자에 대한 취재결과만으로 바로 본건 기사내용을 결론 내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취재도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러시아에서의 미술품 절도 의혹에 관한 기사에 대하여

① 절도 의혹이라는 범죄행위의 존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기사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게 됨으로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진술내용을 신중하게 음미하는 한편 객관적인 입증사실의 취재를 태만히 하지 말고, 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신용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집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B와 A가 본건 로케에서의 코디네이터를 둘러싼 트러블로, 원고 등에 대한 적의(敵意)와 악감정을 품고 있음은 그들에 대한 취재결과에 의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애초부터 그들의 진술을 상당한 정도 예누리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B의 진술은, 본건 미술관에서 C가 「根付」를 응시했다는 것 뿐, 동인이 「根付」를 절도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며, 또 러시아 공항에서 N4와 세관직원 간의 교환에 대해서도 시종 목격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후에 관계자의 언동을 근거로 「根付」의 절도가 있었다고 단정한 것으로, 그 추론에는 비약이 있으며, 단순한 억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케에 있어서의 「根付」의 조사 중 절도의 기회가 있었는지, 혹은 「根付」의 절도가 발각되었는데 러시아의 세관이 그대로 출국을 허용했는지 등 내용자체에도 합리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점이 있어, 신용성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C외에 본건 로케의 관계자들이 절도 의혹을 부정하고 있고, 진술의 사소한 부분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공항에서 C가 금족(禁足)을 당한 것은 통화(通貨)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였다는 점 및 「根付」의 절도가 있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 신용성을 배척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D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는 점, D에 대한 취재가, 피고 Y3가 B를 동행, 오로지 B가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이에 D의 동의를 얻으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D가 경계를 갖게 된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이 D의 진술의 신용성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입증조사에 있어서도 이미 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코디네이트 회사를 통해 러시아의 모스크바 세관당국 및 본건 미술관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관계자 중에서 미술품의 절도 혐의로 세관당국에 신병이 구속된 자는 없으며, 본건 미술관으로부터 미술품을 도난당한 흔적이 없다는 회답을 받아놓고 있는 바, 본건은 반드시 속보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로서도 당연히 이에 대한 입증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입국 시 엔화를 신고하지 않아 출국 시에 갖고 나올 수 없었으며, 세관원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달러로 환전한 후 갖고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 Y2는 여행사에 확인 결과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기 때문에 C의 변명은 신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점도 이미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코디네이트 회사를 통해 조회한 바, 입국 시에 통화의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규칙을 위반한 경우, 환전소가 발행한 통화취득에 관한 은행의 증명서가 그 통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관직원이 이체(移替)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는 회답을 받아놓고 있었으며, 과연 피고 Y2가 러시아 실정에 밝은 여행사를 상대로 충분한 조회를 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② 이상에 의하면 피고들은 관계자의 진술내용을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절도 의혹을 부정하는 다수 관계자의 진술을 안이하게 배척하고, 이러한 종류의 사안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입증조사도 태만

히 하여, 그 자체 신용성을 떨어뜨리고,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는 B 및 A의 진술 만에 의거, 절도 의혹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집필한 것으로, 피고들에 대한 러시아에서의 미술품 절도 의혹을 진실로 오신(誤信)한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4. 쟁점5에 관하여

이미 판시한대로 본건 기사 등의 게재에 의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는 인정될 수 있는 바, 이에 의한 신용저하 등의 비재산적손해(무형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① 본건 기사 및 본건 광고는 원고가 출장감정 때 제작협력금이라는 이름으로 표면에 내세울 수 없는 석연치 않은 금전을 지역에 요구한 의혹 및 본건 로케에 참가한 감정사가 본건 미술관으로부터 미술품을 절도한 의혹이 있음을 적시한 것이며, 적시사실은 모두 원고 또는 그 관계인에게 범죄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비난이 큰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남의 이목을 끄는 명예롭지 못한 내용의 문언을 타이틀 등에 사용하여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표현행위의 내용 자체가 명예·신용에 대한 침해성이 높다는 것 ② 본건 주간지는 약 72만 부 발행되고, 또한 본건 광고는 전국지 및 전동차 내에 매다는 광고에 쓰여 지고 있기 때문에 본건 명예훼손 행위는 다수인이 볼 수 있었다는 것 ③ 모든 기사에서 피고들은 취재결과의 충분한 검토 및 필요한 반면(半面) 취재와 입증취재를 태만히 하여 본건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 ④ 원고는 텔레비전용 프로를 제작·제공하는 회사로서, 프로의 스폰서 기업을 획득함에 있어, 클린기업의 이미지가 극히 중요하며, 지금까지 프로제작을 통해 업계에서 일정한 평가를 쌓아왔다고 인정되어, 본건 기사에 의해 명예·신용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인(推認)된다고 한 본

건에서의 침해양태나 원고의 업무성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손해(무형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한다면 500만 엔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5. 쟁점6에 관하여

본건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사죄광고의 내용 및 게재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고의 명예는 본건 기사 뿐 아니라 본건 광고에 의해서도 침해되었는데, 본건 광고의 기재내용은 본건 제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명칭이 없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본건 광고만으로 바로 밝혀지지 않으므로 본건 광고에 의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본건 기사에 의한 것 보다는 작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죄광고도 『週刊新潮』에 게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전국 신문에 게재할 필요가

지는 없다. 또 사죄광고의 문언은 피고회사의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이 없이 본건 기사에 의한 원고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별지 1과 같이 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별지 2 및 3 기재대로의 사죄광고 게재를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본건 기사의 오보를 사죄하는 광고의 게재로 충분하며, 원고의 관계자에 사죄하거나 영성한 취재자세의 자인이나 앞으로의 보도 방침에 관한 언급까지 사죄광고의 문언에 포함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회복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별지 1 (1) 사죄광고내용 (생략)}

출 처 : 『판례타임즈』 1243호 (2007. 9. 1.) pp. 190~207.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